

【특 집】

만보산 사건과 『리턴 보고서』
- 재만 조선인에 관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고바야시 레이코*

【 차 례 】

1. 머리말
2. 조사위원회가 파악한 만보산 사건
3. 재만 조선인의 어려움과 조사위원회의 배려
4. 맺음말

국문초록

1931년 7월 1일 장춘 근교 만보산에서 이주 조선인과 중국인 농민이 충돌하여, 일본 영사관 경찰이 발포한 만보산 사건이 발생하였다. 본고에서는 제3 기관인 국제연맹에서 파견된 리턴 위원회가 만보산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고찰하였다. 리턴 위원회는 만보산 사건에서 드러난 만주문제 중 재만 조선인의 지위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재만 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중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들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리턴 위원회는 재만 조선인의 중국 귀화 문제도 유의하였다. 일본에게 재만 조선인은 단속 대상이었으며, 중국에 귀화한 조선인의 경우 중국이 일본 관할권을 부인할 우려가 있었으나, 구입한 토지를 일본에게 양도하게 하였다. 한편 중국인에게 조선인은 수전경작(水田耕作)의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만주침탈을 돕는 첩병이기도 하였다.

www.kci.go.kr

* 광운대학교 동북아대학 조교수

이러한 사실을 리튼 위원회는 스스로 조사하고 파악한 후에 재만 조선인은 중일 대립구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배려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이해하였다. 리튼 위원회는 재만 조선인의 거주권을 보호하는 최종적인 수단은 중일간의 분쟁조정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통해서 양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선발된 재판관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를 성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견해를 보였다. 본고는 제3 기관인 리튼 위원회가 재만 조선인의 지위는 배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만보산 사건, 『리튼 보고서』, 조사위원회, 재만 조선인, 상조권

1. 머리말

장춘 근교에서 중국인 중개인 학영덕(郝永德)은 중국인 지주와 상조(商租) 계약한 토지를 조선인 농민에게 전대(轉貸)하였다. 수전을 경작하기 위해 그들이 개척(開墾)한 용수호가 중국인 농민의 토지를 분단시켜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면서 조선과 중국 농민이 대립하게 되었다. 중일 양국의 관헌이 개입했지만 중재에 실패하였고, 1931년 7월 1일 조중 농민이 충돌하게 되었다. 그때 일본 영사관 경찰이 진압을 위해 발포했지만 사상자는 없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조선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오보가 조선에서 확산되자 조선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박해하는 폭동이 발발하면서 중국인 100명 이상이 학살되었다. 이것이 만보산 사건의 전말이다. 한편, 중국 전역에서는 배일 운동이 전개되었다. 일본은 ‘만주’¹⁾를 침략하기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해 이 상황을 이용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에는 만주사변이 발발하였다.

본고에서는 만보산 사건을 당사국의 시점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재고찰할 목적으로, 국제연맹에서 파견한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리튼 보고서』(“Report of the Commission of Enquiry into the Sino-Japanese Dispute”)를 해석하여 제3

1) 이하 괄호 생략. 또한 ‘만주사변’, ‘만주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

자의 시각으로 만보산 사건과 그 사건의 당사자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만보산 사건에 대해서는 朴永錫의 여러 연구를 종합한 『萬寶山事件研究 : 日帝 大陸侵略政策의 一環으로서의』(1985, 亞細亞文化社)는 한국·중국·일본 자료를 수집하고 면밀히 해독했을 뿐만 아니라, 생존 중인 관계자들을 만나 오럴 히스토리 조사를 바탕으로 재만 조선인의 상존권을 둘러싼 당사국 간의 이해관계를 검증하여 사건을 상세하게 밝혔다. 또한 만보산 사건으로 초래된 조선 내의 중국인 배척 운동과 중국에서의 배일 운동도 다루었다. 그리고 만보산 사건은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려는 의도를 넘어 조·중 양민족이 함께 적극적인 대일 투쟁의 의지를 북돋우는 결과를 유도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孫承會의 연구가 있다. 「萬寶山事件과 中國 共產黨」(2003, 『東洋史學研究』83)에서는 중국 측의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국민당 정부는 원래 조선인을 일본의 앞잡이로 여겨 구축 정책을 전개했으며, 만보산 사건의 주요한 원인은 일본의 만몽침략에 있으므로 만보산 사건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중일 외교교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공산당은 사건의 원인은 만몽침략 뿐만 아니라 일본에 의한 반제국주의 혁명 투쟁의 진압에 있다고 하여 국민당과 공산당이 만보산 사건에 대해 서로 대립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만보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한 주체로써 재만 독립운동 단체에 착안한 논문으로 김광재의 「만보산 사건과 한중관계」(2001, 『殉國』126)가 있다. 만보산 사건 이후, 한국에서 무차별적인 중국인 배척 사건이 일어난 것을 언론계, 國民府, 그리고 상해임시정부는 조중 관계의 위기로 파악하는 동시에 재만 조선인의 안전을 위해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중에서도 동북지방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은 ‘吉林韓僑萬寶山事件討究委員會’를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사태를 종식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악화된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1931년 만주사변의 발발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상은 한국, 중국 일본 측의 자료를 주로 이용한 연구이다. 이러한 논문
에 대해서, 본고에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 쓰인 논문에는 나가타 아키히미(長田
彰文)의 『『万宝山事件』と國際關係—米國外交官などが見た事件の一側面』(2007, 『上智
史學』52)이 있다. 이 논문은 제3자적 입장인 미국 외교단 및 보도 기관이 본
국으로 보낸 만보산 사건의 보고서를 통해서 만보산 사건을 더욱 객관적으
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미국의 조선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크다
고 할 수 없었지만, 미국이 일본 측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을 밝혔다.

본고에서는 만보산 사건이 제3 기관에게 어떻게 파악되었는지에 대해 『리
튼 보고서』를 활용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리튼 보고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류타오후 사건 후의 중·일 간 분
쟁에 관하여 중국 정부가 1931년 9월 21일부의 서신을 국제연맹에 보내
“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연맹에서 ‘중립불편(中立不偏)’의 위원회를
만주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호소하여, 국제연맹에서 리튼 백작을
위원장으로 한 조사위원회가 파견되어 조사한 결과 보고서이다.

그 내용은 다음 장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조사위원회의 조사는 단순히 사
건으로 표출된 만주사변 및 만주국에 관한 내용만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만
주의 역사를 조사하고 독자적인견해를 제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만주에 접근하였고 어떤 경위를 거쳐서 사변이 일어났는지
를 검증하였다. 만보산 사건은 만주사변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일 간의 발
생한 주요한 갈등 중의 한 사건으로 인식했으며 그 사건을 통해 조선인이
어떤 입장에 놓여졌는지 대해서도 밝혔다.

이렇게 『리튼 보고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만주문제에 접근한 유례없는
독자성을 가진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은 동시기에 출판된 연구결과
들과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Colonel P.T.Etherton²⁾ and H.Hessel Tiltman,³⁾ “Manchria : The

2) Colonel P.T. Etherton은 투르키스탄(Turkistan)주재 영국 총영사를 맡은 인물이다.

CockPit of Asia,”(1932, Jarrolds)는 당시 만주에 대해 비교적 세세하게 논하였다. 만주국이 수립된 요인으로 만주사변과 ‘나카무라(中村) 대위 사건’을 언급하는 등 구미인에 의한 연구 중에서는 흔치 않은 논문이었지만, 만보산 사건에 관한 언급은 없다. 뿐만 아니라 철도, 상조권 문제, 배일 운동, 만주의 공산주의자까지도 다루었으나, 재만 조선인에 대한 언급도 없다.

조사위원회⁴⁾에 조언을 하는 전문가 집단은 7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구성원 중의 한 명인 C.Walter Young도 만주 전문가였다. 그의 저서인 “Japan’s special position in Manchuria,”(1931, The Lord Baltimore Press)에서도 철도를 비롯한 일본의 만주 권익에 대해 언급했지만 재만 조선인에 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리튼 보고서』는 시간을 들인 실지조사, 면접, 그리고 편지로 의견을 접하여 작성되어 다각적인 시야를 확보하면서 만주의 실상에 근접하려 했기에, 만보산 사건, 나아가서 재만 조선인 문제를 구명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리라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國立公文書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滿州事変(支那兵ノ滿鐵柳條溝爆破ニ因ル日、支軍衝突關係)ノ善後措置關係ノ國際連盟支那調査員關係ノ報告書關係(日、支兩國意見書ヲ含ム)』 제3권(레퍼런스코드B02030461300~B02030462100)에 수록된 『리튼 보고서』의 원문을 이용하였다.⁵⁾

중화민국 정부 대표가 제출한 서한을 기초로, 류타오후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중일 양국 간의 분쟁에 대해 국제연맹이사회가 9월 30일에 9가지 항목을 결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양국 정부가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하고(제5항), 양국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결의하였

3) H. Hessel Tiltman은 영국 신문인 Daily Express의 도쿄 특파원을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을 포함하여 30년간 맡은 인물이고, 동아시아나 일본에 관한 저서로 “The uncensored Far East,” (1937, Jarrolds)나 “The Far East comes nearer,” (1937, Jarrolds)가 있다.

4) 국제연맹에서 파견되었던 빅터 · 블워=리튼 백작[1876~1947] (정식명칭 : Victor Alexander George Robert Bulwer-Lytton, 2nd Earl of Lytton)이 위원장을 맡은 조사위원회의 정식명칭은 “Commission of Enquiry into the Sino-Japanese Dispute”(국제연맹 중일분쟁조사위원회)이지만 이하 조사위원회라고 쓴다.

5) 이 자료에는 영문 원문과 위부성이 작성한 일본어 번역문이 수록되어 있지만 원문을 참조하였다.

다(제6항). 하지만 이 결의가 채택되었을 때, 논의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일본군과 영사관 경찰이 신속하게 완전히 철퇴하고,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중립적인 위원회를 만주에 파견할 수밖에 없다고 표명하였다. 이 제안은 11월 21일에 겨우 일본의 동의를 얻었고 연맹이사회는 1931년 12월 10일 정식으로 조사위원회 설치를 결정하였다.⁶⁾

조사위원회 위원들은 연맹이사회에서 선출되었고 중일 양국의 동의를 얻어, 1932년 1월 14일에 이탈리아인(H.E.Count ALDROVANDI), 프랑스인(Général de Division Henri CLAUDEL), 영국인(The Rt. Hon. The EARL OF LYTTON, P.C., G.C.S.I., G.C.S.E.), 미국인(Major-General Frank Ross MCCOY), 독일인(H. E. Dr. Heinrich SCHNEE) 5명이 뽑혔다. 그리고 1월 21일에 리튼 백작⁷⁾이 위원장으로 뽑혔고 조사위원회에 전문적인 조언을 할 전문가 7명이 선출되었다.⁸⁾

조사위원회는 분쟁의 중심지역인 만주로 가기 전에, 중일 양국의 이익을 확인하기 위해 중일 정부 및 여러 가지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1932년 2월 29일부터 도쿄를 기점으로 7월 20일 까지 조사를 실행하였다.⁹⁾ 방문한 곳은 도쿄, 상하이, 난징, 베이징, 만주 등이며 만주에 6주간 체재하였다. 면접 조사한 사람은 각국 정부의 중요한 인물만은 아니었다. 만주에서는 면접 조사한 현지 주민들의 대부분은 일본이나 만주국이 미리 준비해 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본심을 털어 놓지 않는 것을 조사위원회가 미리 인식하기도 하였다.¹⁰⁾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조사를 시행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만보산 사건에 대해서

6) 外務省, 1932, 「서론」, 『滿洲事變(支那兵ノ滿鐵柳條溝爆破ニ因ル日、支軍衝突關係) 善後措置關係 國際連盟支那調査員關係報告書關係(日、支兩國意見書ヲ含ム)』3, 國立公文書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레퍼런스코드B02030461400, 화면번호0158~0159(이하부터는 「장, (절)」, 『滿洲事變報告書關係』3, 레퍼런스코드, 화면번호 순서로 쓴다).

7) 리튼은 1920년에 인도성 정무차관, 1922년에 벵갈(Bengal) 총독을 역임하며 1925년부터 수년간 인도 임시 총독직도 맡는 등 주로 아시아에서 많은 직무를 맡았다(1974, “The New Encyclopædia Britannica” 15th Edition7, Encyclopædia Britannica, 596쪽).

8) 「서론」, 『滿洲事變報告書關係』3, B02030461400, 0164~0166.

9) 앞의 자료 및 付録「極東ニ於ケル國際連盟調査委員會ノ旅程」, 『滿洲事變報告書關係』3, B02030461300, 0146~0156).

10) 「서론」, 『滿洲事變報告書關係』3, B02030461400, 0162~0163.

어떻게 서술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사위원회가 파악한 만보산 사건

1) 만보산 사건의 실태와 조선에서 발생한 배화(排華) 폭동

조사위원회가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장춘 근교의 만보산에서 중국인 중개인 학영덕(郝永德)이 ‘長農田稻公司’를 위해 중국인 지주로부터 1931년 4월 16일부의 계약에 따라 넓은 토지 1구역을 상조하였다. 그 계약에는 “현장(縣長)이 그 계약조건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 관헌에 의한 공식 승인 없이 학영덕은 빌린 토지 1구획을 조선인 단체에 전대(貸與)하였다.

제 2계약에서는 “전대에 대해 공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인은 중국 관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2계약이 체결된 직후 수마일에 이르는 관개용수로와 부속수로를 개착하기 시작하여 이통강(伊通河)에서 물을 끌어들이어 수전경작(水田耕作)에 이용하려고 하였다. 이 수로는 지형적으로 상조계약 당사자가 아닌 중국인 농지의 넓은 범위를 가로질러 조성되었다. 조사위원회는 이 관개용수로가 현지 중국인의 반대 운동을 일으킨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국인 농민들은, 수로가 자신들의 소유지를 가로지른 문제에 대해 만보산 당국에 항의하면서 당국이 중국인 농민 편에 서주기를 간청하였다. 그 결과, 중국 지방 관헌이 경찰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선인에게 당장 개착 작업을 중지하고 해당 토지에서 퇴거하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일본 측에서는 재장춘 일본 영사가 조선인을 보호하기 위해 영사관 경찰관을 파견하였다. 현지에서 중국과 일본 대표자 간의 교섭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6월 8일에 양국은 각각 경찰대를 철수시키고 만보산 사태를 공동조사할

것에 동의하였다. 이 조사로 제1차 상조계약에서 중국 현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공동조사원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 측은 조선인의 관개용수로가 중국인 농지를 가로질러 토지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일본 측은 조선인이 작업을 중단할 이유가 없고, 아무런 과실도 없는 조선인이 상조계약 절차에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퇴거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¹¹⁾ 양국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그 후 머지않아 조선인은 일본 영사관 경찰의 원조를 받아 용수로 개착을 재개하였다.¹²⁾

조사위원회는 이 일련의 상황이 7월 1일의 사건 발발을 초래하였다고 파악하였다. 관개용수로로 인해 소유지가 분단된 400명의 중국인 농민 단체가 농기구나 창으로 조선인을 내쫓고 용수로를 막아버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본 영사관 경찰은 중국인 농민을 쫓아내면서 조선인을 보호하기 위해 라이플 총을 발포했지만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중국인 농민은 철수했지만, 일본 경찰은 조선인이 용수로와 이통강을 막는 댐을 완성할 때까지 현지에 남았다. 7월 1일 사건 후, 중국 지방 관헌은 재장춘 일본 영사에게 일본 영사관 경찰과 조선인의 행동에 대해 계속 항의하였다.¹³⁾

만보산 사건보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이 분쟁에 대한 조선의 반응이었다. 7월 1일 만보산에서 발생한 사태를 충격적으로 쓴 기사가 일본과 조선의

11) 즉, 학영덕이 중국인 지주에게 토지를 빌린 원래의 상조계약에는 장춘현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계약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학영덕과 조선인 농민들의 계약에는 중국관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조건은 없었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인 농민이 학영덕과의 계약만으로 개착공사를 시작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내용에 대해 朴永錫은 학영덕이 길림성 정부와 만보산 제3구 공안국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얻었다는 사실을 중국 측 사료에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현장의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조계약은 정식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를 상세히 밝혔다. 그와 더불어 일본은 정식으로 승인을 얻었다고 반론을 하였다. 또한 지적하였다(위의『万宝山事件研究—日本帝國主義の大陸侵略政策の一環として—』, 100~101쪽). 다만 『리튼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주장에서 상조계약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 것만 채용하였다.

12) 『제3장 중일 간 만주문제(1931년 9월 18일전), 제6절 만보산 사건과 배화(排華)폭동』, 『滿洲事變報告書關係』3, B02030461700, 0239~0240(이하부터는 제3장의 장 제목을 생략한다).

13) 『3, 제6절 만보산 사건과 배화(排華)폭동』, 『滿洲事變報告書關係』3, B02030461700, 0241.

신문에 실리자 조선 각지에서 중국인 배척 운동이 일어났다. 폭동은 7월 3일에 인천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급속히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중국의 공식적인 보고를 기초로 한 성명에 따르면 중국인 사망자는 127명, 부상자는 393명이었고 250만 엔 상당의 재산이 파괴되었다고 하였다.

이 폭동에 대해 중국은 조선에 주재하는 일본 관헌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폭동을 막을 수단을 전혀 취하지 않았고 중국인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폭동을 진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과 조선의 신문이 만보산 사건으로 중국인 거류민에 대한 조선인 민중의 중요성을 부추기는 충격적이고 부정확한 기사를 실은 것에 대해 저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러한 폭동은 자발적이고 민족적인 감정의 분출로 초래된 것”이므로, 일본 당국은 가능한 선에서 신속한 조치로 진압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⁴⁾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의 항의에 7월 15일의 폭동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망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였다.¹⁵⁾ 조사위원회는 중국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만보산에서 일어난 분쟁은 조선인 거주권과 토지 임차 특권이 1909년 9월 4일 ‘만주에 관한 청일협약(間島ニ關スル日清協約)’(이하, 간도협약라고 쓴다)에 의거하였는데, 그 협약은 간도 이외의 지역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이 거주권이 없는 곳에 거주한 것과, 일본 영사관 경찰을 중국에 주재시킨 사실에 항의하며 중국이 만보산으로 수많은 경찰을 파견한 것이 7월 1일의 사건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일본은 1915년 5월 25일에 조인된 ‘남만주 및 동부내몽고에 관한 조약(南滿洲及東部內蒙古ニ關スル條約)’(이하, 남만동몽조약이라고 쓴다)이 시행되면서, 조선인에게도 일본인과 같은 거주권과 상조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은 조선인이 성실하게 자신들의 쌀을 생산하려고 한 것이며, 토지 임차 절차를 준비한 중국인 중개인이 위법 행위를 한 것에는 책임질 수 없다고

14) 앞의 자료.

15) 앞의 자료.

주장하였다. 일본 정부는 만보산에서 영사관 경찰 철수에 동의했지만 조선 소작농은 계속 남아서 논농사를 지었다. 만보산 사건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되었다.¹⁶⁾

2) 간도협약과 남만동몽조약에 대한 일본의 해석

중일 양국의 거주권 및 상조권에 대한 대립된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중국에게 이른바 ‘21개조 요구’를 하였고 그 중 제2호 안건으로 1915년 5월 25일에 남만동몽조약이 조인되었다. 이에 따라 1915년 8월 13일 일본은 각의에서 간도협약 중에 조선인의 간도 거주권을 인정한 제3조, 청나라가 간도 거주 조선인에게 재판 관할권과 행정적인 지배권 행사를 인정한 제4조, 간도 거주 조선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은 청나라 정부의 보호 하에 있는 것과 두만강을 왕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제5조의 대부분을 소멸시키는 대신에 남만동몽조약을 간도에 적용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토지를 상조할 권리에 대해서는 “일본국민은 남만주에서 각종 상업상의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혹은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상조¹⁷⁾할 수 있다”라는 남만동몽조약 제2조가 있다. 그 외에 간도 거주 조선인의 처우 전반에 관계되는 조문에는 남만주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거나 왕래하며 상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인정한 제3조와, ‘피고주의’에 의거하여 양국이 상호 간 영사재판권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한 제5조 제2항이 있다.

간도 거주 조선인을 일본 국민으로 간주하여 간도협약을 폐기하며, 남만동몽조약을 간도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본이 간도 거주 조선인에게 인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일본 국민으로 반영구적으로 오랫동안 토지를 상조할 수 있는 권리를 간도에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였

16) 「3, 제6절 만보산 사건과 배화(排華)폭동」 『滿洲事變報告書關係』3, B02030461700, 0242.

17) 제2조에 기재된 상조(商租)에는 30년간까지의 오랜 기한부로도 무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는 조차를 포함한다(外務省編, 1968, 「南滿州及東部內蒙古條約ニ關スル條約第二條ニ規定スル商租ノ解釋ニ關スル交換公文」 『日本外交文書』大正4年3상권, 513~514쪽).

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남만동몽조약의 조문을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간도에 적용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과 조선총독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

남만동몽조약이 체결된 후, 1915년 6월 17일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은 가토 다카야키(加藤高明) 외무대신에게 남만동몽조약을 시행할 경우, 간도협약에 저촉되는 조항은 당연히 간도협약이 실효하여 간도 거주 조선인도 일본인과 같이 남만동몽조약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외무상의 회시를 제시하라는 내용의 공한을 보냈다.¹⁸⁾ 6월 18일 스즈키 요타로(鈴木要太郎) 간도 총영사 대리도 간도협약 제3, 4조는 남만동몽조약으로 인해 소멸한다고 간주해도 되는지 여부를 청훈(請訓)하였다. 6월 17, 18일에 각각 조선 총독과 간도 총영사 대리가 같은 공문을 외무대신에게 송부한 사실을 보면 양자가 이전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무대신이 데라우치 총독과 스즈키 간도 총영사 대리에게 보낸 답변도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 스즈키에 대한 가토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간도협약은 특별 지방에 관한 특수 협약이기 때문에 제 3조 및 제 4조는 종래대로 실행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지당하지만 남만동몽조약과 간도협약의 관계에 관한 해석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결정을 미루려는 방침이므로 스즈키 간도 총영사 대리도 그렇게 조치하라는 애매한 내용이었다.¹⁹⁾

이러한 외무성 태도에 불만을 품은 데라우치 총독은 1915년 7월 7일에 다시 가토 외무대신에게 다음 3가지 의견을 보냈다.

1. 재만 조선인과 생활 형태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만주 내에서 간도 거주 조선인에게만 중국 법권이 미쳐 일본 영사재판을 받을 수 없다.
2. 만주에 사는 조선인 사이에 처우의 차이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서 소송 사건이 일어났을 때 따라야 하는 법이 달라

18) 井上學, 1963, 『日本帝國主義と間島問題—1910・20年代前半—』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0, 42쪽.

19) 外務省外交史料館所藏, 1998, 『外務省警察史 4 間島』 部19, 不二出版, 142쪽.

처리하기 어렵다.

3. 만주 내 간도 거주 조선인만 중국 법권에 복종하게 되면, 간도가 조선 민족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의 성격을 더욱 더 강화하게 된다.²⁰⁾

또한, 거의 같은 내용의 의견을 스즈키 총영사 대리도 품신하였다. 이 시점에 이르러 정부는 현지 조선인에 대한 정책상, 간도협약과 남만동몽조약의 관계에 대해 더 신중히 검토하였다. 그 결과, 데라우치 총독의 의견을 채용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인정하고, 1915년 8월 13일에 각의 결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상 및 실세상의 便否를 고려하고 신 조약을 참조하면, 결국, 간도협약 제 3조 및 제 4조 전체, 그리고 제 5조 규정 대부분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조치하는 것이 제국 입장에 유리하며 이론에도 적합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제국 정부는 지금으로서는 중국 정부에 대해, 특히 해당하는 간도협약의 조문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 통보나 교섭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일·중 신 조약에 저촉되는 규정은 당연히 소멸되어야 하는데, 만몽에 관한 신 조약 실시 기일[1915년 8월 25일]후, 간도 조선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 조약을 적용하면, 후일 중국 측에서 일본 관헌의 처치에 대해 항의할 것이 예상되므로, 실제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비로소 설명하고자 한다. [밑줄은 인용자].²¹⁾

외무성의 입장 보다 조선총독부의 강한 의향이 반영되어 간도협약의 제 3, 4, 5조는 소멸되는 대신에 남만동몽조약이 일본 국민이라고 간주되는 이주한 조선인(간도를 포함한 남만주 및 동부내몽고 일대에 거주하는)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는 주장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이 각의 결정은 일본이 중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방침이었고, 중국에서 항의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설명하게 되었다. 일본이 중국의 이해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후에 갈등이나 항

20) 앞의 자료.

21) 앞의 자료, 143쪽.

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였다. 즉, 1915년 8월의 각의결정은 재만 조선인에 관한 중일 간 분쟁의 주요인이었다.

3. 재만 조선인의 어려움과 조사위원회의 배려

1) 재만 조선인과 중일의 이해관계

조사위원회에서는 만보산 사건이 만주사변을 야기한 원인이라는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만보산 사건은 ‘나카무라(中村) 대위 사건’²²⁾과 더불어 만주사변 발발의 요인으로 보지만, 만보산 사건은 원래의 사건이 가진 성질에 비해 훨씬 과장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만보산 사건은 사망자도 없으며, 과거 수 년 간 만주에서 일어난 중국과 일본 군부, 혹은 경찰 간의 충돌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았다. 문제는 한국에서 한국인에 의한 중국인 거류민에 대한 심각한 공격행동이고, 더 나아가 중국인 배척 폭동이 중국의 排日 보이콧을 다시 일으켰다는 것이다.²³⁾

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만보산 사건의 원인으로 상조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상조권은 1915년 남만동몽조약에서 유래하지만, 중국 측

22) 『리턴 보고서』는 ‘나카무라 대위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일본 육군 현역 장교 나카무라 신타로(中村震太郎) 대위는 이미 일본 정부가 인정한 대로, 일본군이 명령한 임무를 받았다. 하얼빈을 지나던 중 대위는 중국 관헌의 여권 검사를 받았지만 농업용 여권을 제시하여 신분을 속였다. 대위는 무기도 휴대했으며, 중국에 따르면 의료 목적이 아닌 마약 등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6월 9일에 수행원들과 같이 타오난(洮南) 부근에서 중국인 병사에게 구속되어, 6월 27일 무렵에 총살되어 주검이 소각되었다. 일본 육군 현역장교의 사건은 다른 어느 사건보다도 일본인을 격분시켰고, 이에 만주에 관한 중·일 현안의 해결을 위해 군사적인 수단을 지지하는 기운이 높아졌으며, 강경하고 신속한 군사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정당화되었다. 일본과 만주에서는 대중집회가 열렸고, 9월의 전반에 일본 신문은 중국이 알보지 못하도록 모든 문제는 군사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반복 보도하여 국민감정을 선동하였다 (『3, 제7절 나카무라 대위 사건』 『滿洲事變報告書關係』3, B02030461700, 0243, 0245~0247).

23) 『3, 제6절 만보산 사건과 배화(排華)폭동』 『滿洲事變報告書關係』3, B02030461700, 0239.

은 상조, 구매, 저당 중 어느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만주에서 토지를 획득하려는 일본 측의 욕구를 ‘만주를 산다’고 하는 국가적 책략의 증거로 해석하였다. 그로 인해 1931년 9월까지 중국에서 전개된 국권 회복 운동이 최고조에 이른 1927, 1928년에는 일본에 대한 중국 관헌의 방해 행위가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²⁴⁾ 일본인이 토지를 조차하는 것은 省令과 地方令을 제정해 여러 장해물을 만들었고, 일본인에게 토지를 조차하는 경우에도 형법으로 처벌하도록 기회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조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미리 지불해야 되는 특별 납부금이나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지방 관리가 일본인에게 전대 허가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다든지 중국 지방 관리에게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일본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장해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상조하거나 설사 중국 법정에서 소유권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담보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획득하였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일본 금융업자 중에서도 큰 금융회사가 획득했는데, 큰 회사들의 일부는 처음부터 광대한 범위의 토지를 획득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일본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일본이 만주 전토와 열하성에서 조차한 토지의 총면적은, 1922~1923년에는 약 8만 에이커(acre)였지만 1931년에는 50만 에이커(acre)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 총면적 안에는 남만동몽조약에 포함되지 않는 북만주에서 상조하여 획득한 토지도 포함되어 있다. 조사위원회는 위 사항들을 밝히면서 오랜 시간에 걸친 일본 측의 토지 상조권에 관한 중·일 양국 간의 논쟁은 대립하고 있는 양국 정책의 근본적인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를 보였다.²⁵⁾ 또한 조사위원회는 상조권을 둘러싼 중일 양국 간의 분쟁으로 인한 조선인의 처지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조선인이 개항장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직업에 종사하는 권리, 또는 간도

24) 「3, 제4절 1915년의 남만동몽조약 및 교환공문과 관련된 제문제」, 『滿洲事變報告書關係』3, B02030461600, 0228~0229.

25) 앞의 자료, 0229.

밖의 만주에서 토지를 상조하거나 획득하는 권리 등을 시인하는지 여부에 관해 중·일 양국은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조선 출신 만주 이민의 자손이나 중국에 귀화한 조선인은 만주에 토지 소유권 및 상조권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대다수 조선인이 그저 소작농으로 중국인 지주와 토지를 상조하는 계약을 맺고 논농사를 지을 뿐이었다. 이러한 계약은 보통 1~3년 기한이고, 갱신여부는 지주의 자유 재량에 달려 있었다.²⁶⁾

중국도 벼농사 지대를 늘리는 것을 원하는 동시에 토지가 일본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선인을 소작농으로 고용하였다. 일본은 조선인을 귀화시켜 토지를 획득하게 하고 만주에서 생산되는 쌀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는 목적을 위해²⁷⁾ 조선인의 귀화는 일본 정부에 이점이 많기 때문에 조선인 귀화 인정 여부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 의견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된다고 분석하였다.²⁸⁾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조사위원회는 중국에게 조선인이란 수전경작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 의한 토지 수탈의 침병이기도 하며, 일본에게 조선인의 귀화라는 방법은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있는 반면 일본에게 토지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즉, 양국의 이해가 교착하는 틈새에 놓인 재만 조선인을 주목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만보산 사건의 당사자인 조선인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1914년 중화민국 국적법에서는, 타국에 귀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외국인에 한해 중국에 귀화할 수 있었다. 1929년의 개정 국적법은 중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외국인에게 원래의 국적 상실을 요구하는 조문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국적법을 조선에 적용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귀화는 일본법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만주의 많은 조선인이 귀화했

26) 「3, 제5절 만주의 조선인 문제」 『滿洲事變報告書關係』 3, B02030461600, B02030461700, 0231~0232.

27) 조사위원회는 일본이 만주에서 쌀을 일본으로 수출시키려고 했지만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3, 제5절 만주의 조선인 문제」 『滿洲事變報告書關係』 3, B02030461700, 0233).

28) 앞의 자료.

으며, 특히 일본 영사관이 비교적 개입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총 조선인 인구의 5~20%가 중국에 귀화하였다.²⁹⁾

조사위원회는, 재만 조선인의 이중 국적 문제가 중국 정부와 만주의 상당국에 영향을 미쳤고, 양측 모두 조선인의 무차별적인 귀화에 혐오감을 품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 이유로는, 조선인이 일시적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일본에 의한 토지 취득 정책의 잠재적인 침범이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30년 9월에 길림성 정부는 성전체의 토지 매매를 관리하기 위해 귀화 조선인이 토지를 매수할 때는 중국인으로서 만주에 영구히 거주할 수단으로 토지를 사려고 하는지, 또한 특정 일본인을 위해 토지를 사려고 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³⁰⁾. 하지만 길림성 지방 관리의 태도에 일관성이 없었다. 지위가 높은 관리의 명령에는 따르면서도, 빈번하게 성정부나 난징 국민정부의 정식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조선인에게 일시적인 귀화 증서를 발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지방 관리는 특히 일본 영사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일시적인 귀화 증명서를 쉽게 발급하였다. 물론 지방 관리는 조선인 구축 정책을 실행하였지만 일시적인 귀화를 인정하는 것은 주로 귀화 수수료를 취득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일부 일본인은 조선인을 일시적으로 귀화시켜 지주로서 이용하거나 토지를 양도하게 하는 것을 일본 측이 묵과하고 있다고 중국인은 주장하였다.

다만 일본 관헌은 일반적으로는 조선인의 귀화에 찬성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일본의 관할권이 미치게 하려 하였다. 일본은 중국 내에서 영사재

29) 앞의 자료, 0233~0234.

30) 1930년 9월에 길림성 정부 주석 張作相이 내놓은「鮮人歸化獎勵ニ關スル吉林省政府訓令」(第10章 間島在住朝鮮人の生活狀況 別紙第5号鮮人 [ま] / 歸化獎勵ニ關スル吉林省政府訓令 『間島問題調書 昭和6年4月調』, B02130106600, 0418~0419)이고 토지 매매에 대한 법령은 1929년 11월 6일부 「歸化鮮人 [ま] / 土地賣買ニ關スル訓令」이다. 제1조에는 귀화조선인이 토지를 구매하려고 할 때, 구입할 토지는 확실하게 자기 경작용이 되고 장래 외국인 혹은 미입적 조선인에게 넘기거나 매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시킨 후, 보증인을 준비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었다(朝鮮總督府警務局, 1931, 『間島問題の経過と移住鮮人』, 137쪽).

관권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필연적인 귀결로써 만주에 있는 영사관 경찰을 유지할 권리를 조선인에게 미쳤다. 하지만 이 일본의 정책은 중국과의 끝없는 분쟁의 근원이 되었다. 일본은 표면상 조선인을 보호하기 위한다고 했지만, 조선인의 토지와 가옥을 수사하고 압류할 권리는 당연하다고 판단하며 실행하였다. 특히 조선인이 독립운동이나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지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압박이 더욱 심각하였다.³¹⁾

1927년 4월에 세워진 난징 국민정부에 대해, 베이징에서 내쫓긴 동북군도 12월에는 난징정부 측에 따른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그 시기부터 재만 조선인에 대한 중국의 박해가 더욱 심해졌다고 일본 측은 조사위원회에 주장하였다. 만주 중앙 및 지방관청에 의해 공포된 수많은 규칙이 조선인을 억압하는 중국의 명확한 증거로 조사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규칙 내용을 대별하면, ‘조선인에 대한 강제 귀화. 그에 따르지 않으면 조선인을 수전 지대부터 배척하려는 규칙’과 ‘터무니 없는 세를 매기면서 집과 토지에 대한 상조 및 조차(租借)계약을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규칙’의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또한 일본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던 조선 인민회는 특히 박해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중국인 학교는 폐쇄되었고 다른 조선인 농민에 비해 조선 인민회에게는 공갈에 의한 징수나 잔학 행위가 허락되었다. 중국은 이런 비귀화 조선인에게 차별적인 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1927년 이래 만주의 중국 관헌은 귀화하지 않는 이상 일본의 관할권이 수반되기 때문에 만주에 조선인이 침투하는 것은 하나의 위협이라고 판단하여 방해하려 하였다³²⁾. 하지만 중국은 조선인에 대한 잔학 행위가 일본에 의해 묵인되었다고 조사위원회에 주장하였다. 즉 조선인의 대다수는 훨씬 반일적이며 조국이 일본에 병합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곤란을 겪지 않았더라면 조선을 결코 떠

31) 「3, 제5절 만주의 조선인 문제」 『滿洲事變報告書關係』3, B02030461600, B02030461700, 0234~0235.

32) 앞의 자료, 0237.

나지 않았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만주에서 일본의 감시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것을 조사위원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중국은 조선인에게 가혹한 귀화 정책을 감행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³³⁾ 더욱이 “중국인 농민이 조선인 농민과 심한 경제적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고 보면, 중국 관헌이 자국 농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리를 옹호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라고 호소하였다.³⁴⁾

2) 조사위원회가 재만 조선인에게 한 배려

중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놓인 조선인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본의 주장과 재만 조선인이 애처로운 곤경에 빠진 사실에 대해 완전무결한 신빙성이 있다고도 생각되지 않고, 억압 수단이 완전히 부당한 것이라고도 결론짓지 않지만, 만주의 한 지역에 있는 조선인에게 중국 측이 취하는 행동은 진실된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주에 있는 규모가 큰 소수민족인 조선인이 토지 상조 문제, 재판 관할권문제 및 1931년 9월의 만주사변의 전조를 형성한 경제 대립에 관한 중일의 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간주하였다. 조선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대다수가 중국과 일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기 바라지만, 그 중에서는 중국과 일본 각국, 혹은 양국에서 달갑지 않은 조선인이라 낙인이 찍힌 그룹이 있다. 그 중에는 독립운동자, 공산주의자, 밀수업자, 마약 판매인, 중국인 비적과 결탁하여 약탈을 하는 조선인이 있다. 조선인 농민조차도 교활한 중국 지주로 인해 부채를 떠안는 경향이 있고, 빈번하게 쉽게 억압 받는다.³⁵⁾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재만 조선인이 중국과 일본 대립관계 사

33) 앞의 자료, 0238. 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1925년에 체결되는 이른바 「미쓰야 협정(三矢協定)」(「不逞鮮人ノ取締方ニ關シ双方ノ協定」) 이다. 이 협정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 관헌은 조선인의 독립운동가를 신속하게 체포하여 일본으로 넘겨줄 것을 결정하였다. 이 협정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비록 조선인에 대한 억압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일본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조사위원회에 호소하였다(같은 자료, 0238~0239).

34) 앞의 자료, 0238~0239.

35) 앞의 자료, 0237~0238.

이에 놓여 박해를 받는다는 인식을 가졌다. 재만 조선인에게 행사한 압박 정책은 중국도 인정한 바였다. 하지만 ‘나무랄 데 없는 완전한 피해자’라고는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억압을 불러들이는 요인을 지니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조선인에 대한 대면조사³⁶⁾를 한 후에도 다음과 같이 조선인에게 신중한 관점을 보였다.

[조선 대표자는 신 국가를 환영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만난 조선인이 자신의 단체를 어느 정도까지 대표하는지는 판단하지 못한다. 적어도 일본에 의한 지배를 피해서 이주해 온 정치적 피난민은 일본의 지배력이 커지는 것을 환영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피난민들은 공산주의 선전에 이바지하는 비옥한 토양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조선에 있는 혁명 집단과 연락하고 있다.³⁷⁾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사위원회는 재만 조선인에 대해 역사적인 배경과 중일 관계, 실제로 박해를 받는 상황을 신중히 판단하여 재만 조선인은 법적인 처우를 배려해야 하는 존재라고 결론을 도출하였다.³⁸⁾

36) 조사위원회가 가진 목적 중의 하나는 만주국 거주민의 신 ‘국가’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만주국 거주민의 소수민족으로서는 몽골인, 만주인, 조선인, 백계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제6장 ‘만주국’ 제3절 ‘만주국’거류민의 의견』 『滿洲事變報告書關係』3, B02030462000, 0308~0309). 조사위원회 앞으로 공적 단체 및 결사가 진술서를 보냈다. 대표단의 대부분이 일본이나 만주국 관헌에서 소개를 받은 것이며,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은 일본인이 쓰거나 수정한 것이었지만 그 점을 조사위원회는 숙지하고 있었다. 또한 면접조사에서도, 항상 심한 곤란이 따랐으며 크나큰 위협으로 인해 조사위원회와 만날 수 없게 되었다고 전해오는 경우도 있었다.

37) 앞의 자료, 0314.

38) 선행연구에서 중일 투쟁에 얽힌 재만 조선인에게 일본과 조선, 그리고 중국의 신문 보도에 대해서 분석되었지만, 다른 나라에 이주한 조선인은 이 일련의 사건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었을까?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The Sino-Japanese Clash in Manchuria : Developments, Historical Background, Korean Position’ “The Korean Student Bulletin”(1931년도 제3호 1931년 10월, 國家報勳處, 2000, 『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23美洲篇5, 207~211쪽)에서 만주사변 발발까지의 과거 2, 3년간은 갈등이 지속되었는데, 그 이유는 중국 측에서 재만 조선인이 일본 만주침략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런 중국 측의 견해에 대해서 조선인이 의식적으로 스스로 일본에 협력하는 것은 전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단언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선인 농민에게 생긴 사건

남만동몽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은 치외법권적인 지위가 일본인과 조선인 양측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조선인에 대해서는 중일 양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즉, 거주권과 치외법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상황을 감안해서 조사위원회는 거주권에 대한 타결 방법을 두 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치외법권이 인정된 거주권은 유지되면서, 새롭게 북만주와 열하성³⁹⁾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은 치외법권이 따르지 않는 거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일본인은 만주 전역과 열하성이라면 어디든지 치외법권이 따르는 거주권을 인정하고, 조선인은 치외법권이 따르지 않는 거주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성의 행정기관이 더 이상 외국으로부터 치외법권이 요구되지 않을 정도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적어도 두 명의 외국인 고문(그 중에 한 명은 일본인)은 최고재판소에 소속시키고, 다른 고문은 다른 재판소에 배속시키는 것이 편의적이라고 하였다. 이들 고문의 의견은 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는 모든 사건(외국인을 포함하는)에 대해서 공개된다. 더욱 확실한 보호 수단으로 장래해야 할 중일 간의 분쟁 조정 조약을 맺기 위한 협의를 통해서 양국 합의에 의거해서 선발된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중국 정부 및 일본 정부가 각국 명의로, 혹은 자국민을 대신하여 제출하는 사안을 다루는 중재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⁴⁰⁾

이러면 중국 관헌이 정중히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도 극히 옳은 선택이고, 거기에 조국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을 느꼈다고 하였다.

39) 남만주와 북만주의 구분은 1907년 7월 30일에 체결된 제 1회 러일협약의 추가조약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정해졌다. 「분계선은 러·한국경의 북서단에서 시작하고 琿春 및 必爾滕湖 북단을 거쳐서 秀水站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직선을 긋고, 秀水站부터는 松花江을 따라서 嫩江의 하구에 도달하고, 여기에서 嫩江의 수로를 거슬러 올라가서 托羅河의 하구에 이른 다음 이 지점에서 托羅河의 수로를 거쳐서 이 강과 『그리니치(Greenwich)』 동경 122도와와 교차점에 이른다. 이 분계선부터 남쪽이 남만주가 된다. 또한 내몽고를 동부와 서부로 나눈 것은 1912년 7월 8일에 체결된 제 3회 러일협약 제 2조에서 「내몽고는 베이징의 경도(『그리니치』 동경 116도 27분)이고, 이 지역을 동서로 2분할한다」고 결정되었다(外務省亞細亞局「乙、對歐米列強關係 / (3)日露協約(同秘密協約)」『支那ニ於ケル日本ノ特殊地位 / 支那問題參考資料』2, B02130063000, 0565~0571).

4. 맺음말

장춘 근교에, 중국인 중개인로부터 전대된 농지에서 행해진 조선인 농민의 관개용수로 건설이 계약과는 관계없는 중국인의 농지를 분단하면서 그들의 농사를 방해하였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조선과 중국 농민들이 대립하였고, 1931년 7월 1일에는 중일 관헌을 둘러싼 충돌 및 발포 사건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만보산 사건에 대해 제3 기관인 국제연맹에서 파견된 리턴 조사단이 조사하면서 사건을 어떻게 파악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원래 조사위원회는 류타오후 사건으로 시작되었던 중일 분쟁을 조사할 목적으로 파견되었지만, 만주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빈번했던 중일 충돌이나 간도를 포함한 만주에 있는 중일 간의 이해관계를 역사적으로 규명했고, 그 가운데 만보산 사건에도 눈을 돌렸다. 조사위원회는 만보산 사건은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정도의 심각성이 없고 그 후 조선에서 발생한 중국인 배척 운동이나 중국의 배일 운동이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재만 조선인의 처우 문제였는데, 위원회에 만몽정책에서 체결된 남만동몽조약이 유효하다고 하는 일본과 1909년에 이루어진 간도협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대립에 그 원인이 있다고 규명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재만 조선인 농민이 중국에 귀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하였다. 조선인이 중국에 귀화하여 중국인으로서 획득한 토지를 일본에게 양도하는 조선인이 출현하게 되었다. 중국에게 재만 조선인이란 수전경작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 토지를 공급하기 위한 첨병과 같은 존재도 된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일본에게 조선인은 원래부터 단속의 대상이며 조선인이 중국에 귀화할 경우에는 일본의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있지만, 일본에게 토지를 가져다주는 존재였다고 파악하였다. 즉, 재만 조선

40) 『제10장 고찰과 국제연맹이사회의에 제의』 『滿洲事變報告書關係』3, B02030462100, 0348~0350.

인은 양국의 이해관계 사이에 놓인 존재로, 국제기관이 이를 배려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했으며, 보고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의의 있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선인에게 놓여진 상황을 깊게 이해한 조사위원회가 만주에 있는 조선인의 거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남만동몽조약을 유지하면서 북만주 및 열하성의 일본인과 조선인에게는 치외법권이 따르지 않는 거주권을 인정한다. 혹은 일본인은 이러한 지역 어디든 치외법권이 따르는 거주권이 인정되지만 조선인은 거주권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차선책에 지나지 않고, 보다 확실한 보호 수단으로 중일간의 분쟁조정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통해서 양국의 합의에 따라 선발된 재판관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를 성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부기 : 일본 측 고유명사는 일본한자로 표기함.)

참고문헌

1. 자료

海軍軍令部, 1931, 「萬寶山事件」 『支那特報』5, 레ファレン스코드 C05021912000, 國立公文書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外務省外交史料館所藏, 1998, 『外務省警察史』4 間島ノ部19, 不二出版.

外務省亞細亞局, 1920, 『支那ニ於ケル日本ノ特殊地位 / 支那問題參考資料』2, 레ファレン스코드 B02130062200~B02130063900, 國立公文書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外務省亞細亞局第二課, 1931, 『間島問題調書 昭和6年4月調』, 레ファレン스코드 B02130103400~B02130107600, 國立公文書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外務省, 1931, 『万宝山農場事件』排日關係 / 關東廳報告, 레ファレン스코드 B02030175500, 國立公文書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外務省資料課, 1931, 「万宝山農場事件及朝鮮事件ニ對スル英字ノ論調」 『綜合資料』6-21, 레ファレン스코드 B10074566000, 國立公文書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外務省, 1931~1932, 『万宝山農場事件』, 레ファレン스코드 B02030167400~B02030168000, 國立公文書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外務省, 1931~1932, 『万宝山農場事件』排日關係1~5, 레ファレン스코드 B02030168500~B02030175000, 國立公文書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外務省, 1931~1932, 『万宝山農場事件』輿論並新聞論調1~7, 레ファレン스코드 B02030176200~B02030184700, 國立公文書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外務省, 1932, 『滿州事變(支那兵ノ滿鐵柳條溝爆破ニ因ル日、支軍衝突關係) / 善後措置關係 / 國際連盟支那調査員關係』3, 레ファレン스코드 B02030445300~B02030446000, 國立公文書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外務省, 1932, 『滿州事變(支那兵ノ滿鐵柳條溝爆破ニ因ル日、支軍衝突關係) / 善後措置關係 / 國際連盟支那調査員關係 / 報告書關係(日、支兩國意見書ヲ含ム)』3, 레ファレン스코드 B02030461300~B02030462100, 國立公文書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國家報勳處, 2000, 『海外의 韓國獨立運動史料』23 美洲篇5.

朝鮮總督府警務局, 1931, 『間島問題の経過と移住鮮人』.

2. 단행본 및 논문(국문, 일문)

小林玲子, 2005, 『「韓國併合」前後の間島問題—「間島協約(1909)의適用をめぐって—』, 一

橋大學大學院社會學研究科提出博士論文.

- 김광재, 2001, 「만보산 사건과 한중관계」 『殉國』126.
- 金泰雄, 2009, 「1920·30년대 한국인 대중의 華僑 認識과 國內 民族主義 系列 知識人의 내면세계」 『역사교육』112.
- 長田彰文, 2007, 「万宝山事件」と國際關係—米國外交官などが見た事件の一側面」 『上智史學』52.
- 綠川勝子, 1969, 「万宝山事件及び朝鮮内排華事件についての—考察」 『朝鮮史研究會論文集』6.
- 朴永錫, 1981, 『万宝山事件研究：日本帝國主義の大陸侵略政策の一環として』, 第一書房.
- 朴永錫, 1985, 『萬寶山事件研究：日帝 大陸侵略政策の 一環으로서의』(재판), 亞細亞文化社.
- 박선영 譯註, 2004, 「완파오산(萬寶山) 구화(仇華) 폭동에 관하여」 『中國史研究』33.
- V. A. G. R. Bulwer-Lytton · 朴永錫, 1986, 『리튼 보고서』, 探求堂(1932, “Report of the Commission of Enquiry into the Sino-Japanese Dispute”).
- 孫承會, 2003, 「萬寶山事件과 中國共產黨」 『東洋史學研究』83.
- 孫承會, 2007, 「만보산 사건과 중국의 언론」 『역사문화연구』28.
- 孫承會, 2009, 「근대 한중관계사의 새로운 시각 모색：萬寶山事件 연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歷史學報』202.
- 孫承會, 2009, 「1931년 植民地朝鮮의 排貨暴動과 華僑」 『中國近現代史研究』41.
- 李在鈴, 2004, 「南京國民政府時期 中國의 韓國認識：萬寶山事件에 관한 輿論動向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31.
- 井上學, 1973, 「日本帝國主義と間島問題—1910·20年代前半—」 『朝鮮史研究會論文集』10.
- 柳光烈, 1933, 「滿洲問題讀本 리튼報告書와 滿洲問題」 『實生活』4-2.
- 渡部昇一, 2006, 『(全文)リットン報告書=Report of the commission of enquiry into the Sino-Japanese dispute』, ビジネス社.
- 장세운, 2003, 「만보산 사건 전후 시기 인천 시민과 화교의 동향」 『인천학연구』2-1.
- 許春花, 2007, 「『滿州事變』以前の間島における朝鮮人の國籍問題の展開」, 一橋大學大學院社會學研究科提出博士論文.

3. 단행본 및 논문(중문)

- 朴昌昱, 1995, 『中國朝鮮族歷史研究』, 延邊大學出版社.
- 權立, 1989, 「試論中國朝鮮族在歷史上的法律地位問題」 『朝鮮族研究論叢』2, 延邊人民出版社.

4. 단행본 및 논문 (영문)

- A. R. Lindt, 1933, *Special correspondent with bandit and general in Manchuria*, Cobden-Sanderson.
- C.Walter Young, 1931, *Japan's special position in Manchuria*, Lord Baltimore Press.
- C.Walter Young, 1931, *Japanese jurisdiction in the South Manchuria railway areas 1~3*, The Johns Hopkins Press.
- Colonel P.T.Etherton and H.Hessel Tiltman, 1932, *Manchuria : The Cockpit of Asia*, Jarrolds.
- H. Hessel Tiltman, 1937, *The uncensored Far East*, Jarrolds.
- H. Hessel Tiltman, 1937, *The Far East comes nearer*, Jarrolds.
- Harold Parlett, 1929, *A brief account of diplomatic events in Manchuria*, Oxford University press.
- Henry Walsworth Kinney, 1930, *Manchuria today*, Printing by Hamada printing co.

■ Abstract ■

The Wanbaoshan(萬寶山) Affair and “Lyttton Report” :
Regarding The Problem of Koreans in Manchuria

Kobayashi Reiko

Hao Yongde (郝永德), a Chinese broker, subleased land to a group of Korean farmers in Zhangchun (長春). The Koreans dug a rice paddy irrigation ditch traversing large areas of land that were cultivated by Chinese farmers who were not parties to either lease transaction. As a result, on July 1, 1931, the Chinese farmers armed and drove the Koreans away. While the Japanese consular police opened fire to disperse the mob, there were no casualties. This incident is known as the Wanbaoshan (萬寶山) Affair. In this report, I consider the role of the Lyttton Commission, a third party dispatched by the League of Nations to investigate the affair.

The Lyttton Commission regarded the Wanbaoshan Affair as a minor incident. But because of the precarious status of Koreans in Manchuria and their treatment at the hands of the Chinese, and because the sensational newspaper coverage in Korea of what occurred at Wanbaoshan—though there were no casualties the papers claimed that two hundred Koreans died, which eventually led to serious attacks by Koreans upon Chinese residents in Korea (127 Chinese were killed) and eventually to the anti-Japanese boycott in China—the Lyttton Commission could not but pay attention.

The Commission considered the problem to be caused by opposition between Japan, which claimed that the Sino-Japanese Treaties and Notes of 1915 were valid, and China, which asserted that the Jiandao (間島) Agreement of 1909 still stood. The Lyttton Commission additionally focused on the problem of Koreans naturalized as Chinese citizens in Manchuria. This group posed both problems

and opportunities for the Japanese. While as Koreans, this group was considered “Japanese” and therefor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If Koreans in Manchuria naturalized as Chinese, Japan might lost jurisdiction, but at the same time this group tended to collaborate with the Japanese, or were at least used as tools of the Japanese government—many who naturalized were able to purchase land according to Chinese law, which they then handed over to Japan. In other words, for the Japanese, the Korean farmers in Manchuria were a means to confiscate Manchurian land.

The Lytton Commission recognized that the Koreans in Manchuria were stuck in the middle of the opposing forces of China and Japan and should therefore receive special attention. The commission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informing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about the situation of Koreans in Manchuria through the “Lytton Report.”

